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환거래 자유의 권리화〉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61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2
1. 외국환거래 자유의 권리화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6항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12.

다. 회 부 일 : 2026.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외환거래의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Ⅲ. 검토의견

1. 외국환거래 자유의 권리화(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4) - <신설> - <신설> - (생략) (제1항 및 제2항) ○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6) - (생략) (제1항~제5항) - <신설>	○ 임원임기(§12) - 외국환거래 자유의 권리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는 외국환거래 제한 및 강제 금지 (제2항) - (현행과 같음) (제3항 및 제4항) ○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6) - (현행과 같음) - 외국환거래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 또는 처분 금지 (제6항)

개정안은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외환거래 제한이나 불이익한 조치를 방지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①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천명하고(안 제4조제1항 신설), ② 정당한 사유 없는 외국환거래 제한 및 강제를 금지하며(안 제4조제2항 신설), ③ 외국환거래 등을 이유로 하는 정부의 불이익 조치 또는 처분을 금지하려는 것(안 제6조제6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함.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함으로써, 외환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업의 해외 투자나 국민의 합법적 자산 이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경

제활동의 예측가능성과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안 제6조제6항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조치 또는 처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개입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감독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 이는 ① 외국환거래의 자유와 ② 외환시장의 안정을 균형 있게 도모하려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목적과 상충될 수 있음.¹⁾

또한, 안 제4조제2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율하고 있으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살펴보면,

① 위기 시 외국환거래의 정지·강제(제6조제1항2), ②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예치 의무(제6조제2항3), ③ 허가·신고·보고 등 절차적 제

1) 「외국환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환거래법」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회사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3) 「외국환거래법」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②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한(제15조, 제17조, 제18조), ④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감독(제12조4)
등 외국환거래에 대한 제한 및 강제가 가능한 경우와 그 요건을 법률
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안 제4조제2항의 신설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

-
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정보를 제출한 경우
10.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2.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1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구체적인 규율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2005년 외환거래 자유화의 일환으로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모든 외국환거래는 신고 후 자유롭게 가능하므로 현행법으로도 외국환거래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동 개정안이 외환당국의 정당한 조사·검사, 행정처분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신 설> <신 설> ①·② (생략)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① 거주자는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받는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 또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의처

02)6788-5148